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고찰(1)

목 차

- I. 머리말
- II. 특허제도의 변화
- III. 국제수준에서의 재검토
 - 1. 개도국입장에 있어서 파리조약 재검토 및 통일화조약안
 - 2. 국제조약 가맹현황
- IV. 개도국의 특허법
 - 1. 자국을 위한 특허법과 국제적 조정
 - 2. 현행특허법의 비교검토
- V. 맺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 號)

I. 머리말

현재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지적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종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자주 기술개발력이나 기술수출력을 서서히 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신장시켜 가고 있는 신흥공업경제지역군(NIES), 그것에 이어 아세안 諸國 등에 있어 있어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특허법, 상표법의 정비만이 아니라 저작권법 또는 그 특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이들 나라의 대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정책을 취하기 시작하고, 내국법의 개정과 공히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2국간 교

섭에 있어서 부정상품의 취체를 포함,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신흥공업경제지역군 국가 등의 하이테크산업의 성장이 있고, 미국에 하이테크제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산업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 1986년에는 미국의 하이테크무역수지는 적자로 전락하는 일이 있었다.

개발도상국 등에 있어서 하이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진국으로부터 고도 기술을 도입하여 자주기술개발체제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 즉응하기 위하여 외자, 기술도입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였다고 생각되어지며,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산업정책이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의거 동일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특허법에 관하여 국제적 수준에서의 개도국의 특허문제를 정리하고, 신흥공업경제지역군 및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특허법의 주요 문제점(개정점을 포함)을 검토하고, 이들의 나라들에 있어서 특허법의 새로운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특허 제도의 변화

개발도상국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제국의 대부분은 19세기 전반에 독립하여 입법사업에 착수 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신흥공업국에 있어서 최초의 특허법은 1883년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조약 발효전에 제정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이 독립한 해와 최초의 특허법 제정해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1816년과 1864년, 브라질에서는 1822년과 1830년, 멕

시요에서는 1821년과 1832년 이었다.

브라질은 파리조약의 최초 조인국의 하나이고, 개발도상국으로서 파리조약의 수차에 걸친 개정작업에 참가해온 유일의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1883년 파리조약의 조인을 위한 회의에는 참가했지만 조인은 하지않고, 파리조약에 가맹한 것은 1967년이다.

멕시코는 1886년의 제1회 파리조약개정회의에 참가했지만 파리조약에 가맹한 것은 1903년이다.

안데스그룹에서는 최초의 특허법은 19세기의 중반부터 말에 걸쳐서 제정되었지만 파리조약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 (역시 에쿠아도르는 파리조약에 1884년에 가맹했지만 1886년에 동맹을 탈퇴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30년 이래 수입대체공업정책이 추진되어, 주요국에서는 소비재의 수입대체가 1950년대에 거의 종료하여 그 중반부터 1960년대에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일부 수입대체가 행해지게 되었다. 장기에 걸친 보호정책과 국내시장의 과점화는 산업의 기술혁신을 생성해 낸 것이 아니라 기술진보의 지체를 초래하였다. 각국은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있어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외국기술의 도입은 통상 외국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행해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술발전의 지체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본격적으로 자주기술개발 중시의 기술정책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외국기술의 도입관리정책의 실시방향으로 돌아섰다. 이것은 공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외국기술의 국내화를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특허기술에 관해서도 우선 국내에서 실시촉진되도록 하는 조치를 필요로 했다.

이와같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61년의 제16회 국련총회에 있어서 브라질 및 콜롬비아가 「개발도상국의 기술에 있어서 특허의 역할」이라고 명한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이 제안은 종래의 특허제도가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외국 특허에 대한 실시료의 지불이 개발도상국에 결핍된 의회사정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종래의 특허제도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부터 국제적으로 재검토 해야만 하는것을 요청한 것이다.

1961년 당시의 개발도상국의 특허법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법률 및 관행에 기초한 것이거나 또는 이들 나라의 식민지시대의 것을 계승한 것이었다.

상기 국제연합에서의 결의나 1964년의 지적재산권보호국제합동사무국(BIRPI)에 의한 발명에 관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법의 영향을 받고 그후 브라질, 멕시코 등의 라틴아메리카 제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은 1960년대의 후반으로부터 70년대의 중반에 걸쳐서 특허법 개정을 행하였다.

이들 개정법은 특허권자(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다수가 외국인)의 사적이익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부터 자국의 일반공중의 이익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한 것이다.

개정법은 선진국이 공업화의 초기에 채용하고 있던 특허법이 모범이 된듯한 내용을 가지고 특허권자의 실시의무, 특허기간, 특허대상 등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권리축소가 계획되었다. 이것은 자국의 사회·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에 적합한 내용의 특허법을 가질 것, 즉, 국제적 조정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특허법의 개정을 행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특허법의 이들 변화는 국제수준에서는 파리조약의 개정안이나 WIPO에 의한 발명에 관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법의 개정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다.

III. 국제 수준에서의 재검토

1. 개도국 입장에 있어서 파리조약 재검토 및 통일화조약안

1974년의 국련특별총회에 있어서 신국제경

제질서에 관한 선언의 채택후 WIPO는 상기 모델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파리조약의 재검토의 문제는 1974년 6월에 WIPO의 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인도(파리조약의 비가맹국이지만 WIPO 설립조약의 체결국이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의해서 1974년 9월에 WIPO 조정위원회 및 파리동맹 집행위원회는 이후 WIPO의 활동에 있어서 「파리조약 가맹국 WIPO 설립조약체결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정부전문가위원회를 창설하여 파리조약개정의 모든 문제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초래하기 위한 추가규정을 검토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특허제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파리조약을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을 고려한 것이다.

파리조약의 개정문제는 1980년 2월에 개최된 제1기 외교회의에서 11항째 예를 들면 발명자중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공통관심사는 외국의 특허발명을 여하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선진공업국은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특허제도를 필요로 하였다. 이것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명을 해낼 가능성이 낮고 特許制度는 자국민을 위한 발명장려의 수단으로서는 거의 기능하지 않으며 외국인을 위한 발명보호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허발명의 實施義務나 不實施에 대한 제재의 규정을 강화하여 특허발명의 국내에서의 실시촉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국내법의 규정에서 관하여 국제적 수준에서는 파리조약을 개정하여 국제적 합의를 얻는 것을 개발도상국은 필요로 하고 있다.

파리조약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항목의 하나

인 제5조A-특허발명의 不實施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하여 제2기 외교회의에서 심의되었다. 그결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조치로서 제5조A의 제8항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강한 반대도 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최종적 합의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에 관해서는 파리조약의 최초의 원문 제5조 후단에 명기되어 있었다. 특허발명의 不實施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대별하여 強制實施權의 현행 파리조약 제5조A에 있어서도 양방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리조약 개정교섭에 있어서 브뤼셀조약(1890년) 이래 개정의 度에 취소의 쪽은 약해지고 강제실시권에 관해서도 제한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자에 관해서는 런던조약(1934년)에 있어서 實施權의 최초의 강제적 設定日로부터 2年の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결정되었다. 또 리스본조약(1958년)에 있어서 強制實施權은 배타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明定되었다.

제5조A의 개정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不實施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가능성을 보다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행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개정안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규정에서는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채택되면 特許權의 보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온 파리조약의 개정역행하는 것이 된다. 역시 파리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는 1984년에 개최된 후에는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문제에 관해서 교섭이 중단된 때부터 개최되고 있지 않다. 1985년 이래 諮門會議(외교회의 준비를 위한 사무적인 협의를 행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그 검토를 행해오고 있지만 외교회의 개최의 전망은 서있지 않다.

또한 WIPO 에서는 1985년 7월이래 特許制度統一化條約案을 검토해오고 있다. 상기의 파리조약 개정교섭의 중단과 同條約에서는 특허

문제 등의 실제적 규정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긴다고 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同條約을 개정하여 각국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꾀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이때문에 특허제도 통일화조약은 특허제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特許期間 不特許事由 등 22항에 관하여 검토가 겹쳐져 오고 있다. 이 조약은 큰 줄거리에 있어서 정리되어 오고 있고 파리조약 제19조에서 정하는 특별규정으로서 체결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제 19조에서는 동맹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한 별도로 상호간에 産業財産權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행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특허제도 통일화조약은 파리조약의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을 검토사항으로 할 수가 있지만 상기에서 기술한 특허발명의 不實施에 대한 제재와 같은 사항은 제외되고 있다.

이 條約의 심의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참가하고 있고 不特許事由 特許期間 등에 관하여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을 대표하여 많은 사항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역시 이 조약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특허사유나 특허기간에 관해서는 現行法의 규정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2. 국제조약 가맹현황

WIPO 設立條約에의 개발도상국의 가맹국은 매년 불어나고 있고, 1990년 1월 1일 현재 同條約加盟國數는 126개국이다. 한편 파리조약의 가맹국수는 동년 현재 100개국이고 10년간 10개국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고있다. 이것은 파리조약 개정 교섭의 중단과 개발도상국의 국내법 정비의 문제도 있어서 가맹국수가 불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제국은 파리조약에 처음부터 가맹하고 있는 브라질을 포함 현행 파리조약에는 비판적으로 많은 나라가 가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WIPO 설립조약에는 안데스 그룹 5개국중 볼리비아를 제외하고는 가맹하고 있다. 가맹년도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1980년, 베네주엘라가 1984년, 에쿠아도르 1988년이다.

WIPO 設立條約, 파리조약, GATT의 3조약의 가맹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다.

WIPO 설립조약, GATT의 2조약의 가맹국은 인도, 태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이다. WIPO 設立條約만의 가맹국은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이다. GATT만의 가맹국은 싱가포르이다. 역시 홍콩에는 영국의 직할식민지로서 파리조약이 확장적으로 적용된다. 대만은 中·美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은 2국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속> (白仁洪記)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 勸獎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와 職務發明補償制度 實施는 비단 大企業뿐만 아니라 大企業과의 競爭에서 이기고 나아가 中堅企業 또는 大企業으로 跳躍하려는 中小企業에게는 더욱 必要한 制度인 것입니다.

날로 熾烈해지는 國內外 競爭與件속에서 企業經營戰略의 要諦는 持續的인 自體 研究開發을 통한 技術革新과 新製品 開發이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企業의 經營實情에 맞는 特許管理 專擔部署 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의 採擇과 效率的 運用은 큰 도움이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아울러 이미 이 制度들을 採擇하여 實施하고 있는 企業은 制度의 改善 및 補償金의 引上等 制度運營을 더욱 活性化 함으로써 어려운 經濟環境 속에서 企業의 繁榮을 기하고 나아가 國家産業發展을 위한 積極的인 參與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